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내규

## 제 1 절 입학전형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전형절차 및 이의·불복절차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학전형절차의 타당성과 공정성의 유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 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원장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심의사항)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형에 관한 사항
2.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의와 불복에 관한 심사
5.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구성) ① 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부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예정)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2절 입학전형 절차 및 불복 절차

제9조 (입학전형계획 공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계획을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학전형에 관한 이의 및 불복) ① 입학전형 지원자는 입학전형에 관하여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실에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면 대학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입학전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나 불복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구성)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전형과 관련한 이의나 불복을 조사·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5. 30.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대학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내규 상의 대학원장의 업무는 법과대학장이, 부원장의 업무는 법과대학 교학부장이, 행정관리부장의 업무는 법과대학 법학과장이 대행한다.

부 칙(2011. 1. 10. 개정)

이 내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8. 개정)

이 내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5. 6. 개정)

이 내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